

- 질 문 : 중앙레포츠 공원 관리인에게 무전기, 가스충, 일반전화기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
- 답 변 : 무전기 2대는 지급하였고, 일반전화기 1대는 6월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가스충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구입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질 문 : 금년도 준설작업의 위치, 금액 등 자세한 계획제출 특히 상습침수 지역의 준설사업을 속히 요함.

- 답 변 : 우리시의 하수도 준설계획은, 매년 년초에 하수도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 이와 병행하여 수해예상 지역이나 주민민원 사항을 수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회에, 우리시의 하수도 준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준설 사업은 주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맨홀·집수받이 등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 소유한 준설기로 준설이 불가능한 소하천, 암거준설은 매년 예산에 편성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해당 부서별 '92년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에서는 예산사업으로 소사2동 및 3동의 심곡북개천 준설공사 1,230m에 9,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하수도관 준설 16,500m에 현재 13,500m 준설하여 82%를 완료하였으며, 경인국도를 비롯 소사로 등에 맨홀준설 26개소를 계획, 83개소를 준설하였고, 집수받이 준설을 72개소를 계획하였으나 1,236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심곡북개천 및 삼정동 52-6외 5개소 2,570m에 1억4천5백만원을 투자 계획 하였으며, 현재 심곡북개천 준설에 989m를 실시 1억 8천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관 준설을 심곡지구 3,911m, 원종지구 532m, 오정지구 236m, 내동 1,2지구 2,851m를 실시 총 10,830m중 8,832m를 실시 82%를 실시하고 있으며, 맨홀은 13개소를 계획하였으나 현재 105개소를 준설하였고 집수받이는 부일로, 중앙로에 집수받이 1,530개소를 준설 당초 433개소를 더 많이 준설하였으며, 특히 침수지역은 우기 전후에 집중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예상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피해와 배수의 원활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 우기시까지 최대한 준설을 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할것을 약속드리며,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심 사 보 고 서

부천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2년 5월 12일

나. 제 안 자 : 부천시청

다. 회부일자 : 1992년 5월 13일회부

라. 상정일자 : 1992년 5월 26일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및 의견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담당관 김경호)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의 개정(법률 제4466호, '91. 12.31)

—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나.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
- 위원은 판계 국장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로 구성

○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 가능

○ 위원회의 기능: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함.

-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
-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

○ 위원의 실비 변상: 위원회 개최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 조례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3. 질문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제2조 3항중 위원은 판계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규정에 분야별 인원 안배규정이 있는지	위원회 분야별 인원안배의 규정은 없으나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국장급 공무원, 의회의원 맞게 적정 안배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각종 위원회의 구성상 전문분야 위원 위촉인원 안배는 몇명정도가 되는지	구성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평균 2-3명 정도의 전문가로 위촉함.
각종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의원을 다수 참여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	각종 위원회에 가능한한 다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시의 정책결정 등 중요사항은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소속위원에게 보고 하는 식의 형식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회의원 및 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다수 참여시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 시킬수 있는 방안 강구	앞으로 중요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소속 위원들에게 사전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음
본 부천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구속력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나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있어 당연직 위원장이 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의 원 명	주 요 요 지
	없 음

나. 반대토론

의 원 명	주 요 요 지
정월남, 윤호산의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제2조 3항 인원구성에 있어 행정부의 중요정책 결정에 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시키도록 하자.

5. 수정안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1992년 5월 26일

제1차 총무위원회

○ 제 안 자 : 정월남, 윤호산의원

나. 수정이유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의 중요정책 결정사항인 만큼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위원의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시민의 종합적인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다. 수정 주요골자

부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중

- 위원은 관계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위원은 관계국장급 공무원과 의회의원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동 조례 제9조(수당)을 수당과 여비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제2조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의회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자는 소수의견제시

8. 기타 필요사항

없 음

9. 체계자구 심사 내용

없 음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2. 5. 12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2. 5. 13일 회부

라. 상정일자 : 1992. 5. 25일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가. 제안이유

○ 한번 추천을 받은자는 2년동안 재추천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 현행 추천제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유능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의회 개원으로 폐지된 시정자문위원회를 추천권자에서 삭제 하였음.

나. 주요골자

구 분	개 정 내 용	조 항	비 고
조 례	○ 수상대상자의 추천 - 시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추천권자에서 제외 - 한번 추천된자의 2년 이내 재추천 제한규정의(제4조의 제2항)삭제	제4조	제 정

3.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제4조 수상대상자 추천 부문중 지역사회발전부문에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도록 하자	의회에서 추천은 가능하나 의회위원이 수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에서 추천한 시민에 대하여 의원이 심사하게 되는 모순점이 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의 원 명	주 요 요 지
김태현의원	지역사회발전 부문 추천 기관중 부천시 시정자문위원회는 시의회 출범과 동시에 해체된 만큼 삭제되는 것은 당연하며 유능한 사람을 수시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원안에 찬성함.